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출자한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 시행일부터 3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입법함(안 부칙 제2조)

II. 검토의견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특례를 신설하려는 입법취지에 맞추어 권한자, 특례 내용,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7장(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비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의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탕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용정보, 금융거래 정보, 가상자산 자료, 국세·지방세 과세자료, 각종 연금·보험·급여 자료 등을 국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가상자산사업자,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채무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1개의 조문에 담고 있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안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정보 제공요청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채무조정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체라는 법적 성격이면서도 채무조정기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관계로 방대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목적이나 자료·정보를 제공할 기관·단체가 정보 등의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함.

둘째, 안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하는 자료·정보의 목록을 보면, 가족관계·주민등록 자료, 국세·지방세 자료 등 일부 자료·정보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제공 금지 및 비밀유지의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금지 조항, 세법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 일부만 명시하고 많은 법률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정보제공 관련 의무조항들을 적용 배제하는 특별조문으로서 법제 원리상 법률 간의 충돌사항은 법률의 형식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중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열거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탕감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개인정보 등의 수집 절차를 개시하려는 취지이지만, 개인식별정보 및 신용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의 제공·수집 사실을 사후에라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통지 절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다른 법률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등의 보호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특례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채무조정기구의 지정·고시(안 제44조의2),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안 제44조의3),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안 제44조의4),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절차(안 제44조의5) 등 4개 조문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구분·정리함으로써 특례의 권한자,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4개 조문을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의 장(章)으로 묶어서 한시법으로 시행될 신설 조문의 위치

를 간결히 하였음.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u>제32조의2(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특례) ①</u> 보유한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면제 및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업무(이하 “채무조정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삭 제〉 (제7장을 신설함) <u>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u> <u>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고시)</u>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u>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u>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3. <u>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u> 4. 「<u>부동산등기법</u>」에 따른 등기부, 「<u>건축법</u>」에 따른 건축물대장,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u>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u> 6.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채무조정기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기구의 요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제4조	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를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u>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u> 2.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u>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u> 5.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u>주민등록법</u>」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u>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u> 7. 「<u>부동산등기법</u>」에 따른 등기부, 「<u>건축법</u>」에 따른 건축물대장,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u>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u>
--	--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채무조정기구는 제2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한 사실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조회 방법과 정보가 제공 또는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 사항·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u>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채무조정 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u>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 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u>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수집 등에 대한 통지 및 특례)</u>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	---	---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